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면제〉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54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29.
3.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¹⁾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²⁾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게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 ----- ----- ----- ----- ----- -----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단서 신설>	1. -----.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② ~ ⑫ (생략)	<u>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운용과 보급을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만 충전 중 화재 가능성이 있는 한편 외부인 출입증가에 따라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전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44.6%로 주차 중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 대비 26.6%에 불과한 내연기관차³⁾에 비해 주차·충전시 화재위험성이 큰 점,

전기자동차 등록대수(68만 4,244대)⁴⁾에 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기수(39만 4,132기)⁵⁾가 부족하여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3)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청, 본격 나들이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2024.4.

4)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5)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개정안은 유아 또는 청소년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제한하려는 취지임.

다만 화재위험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1만대 당 화재건수(1.07대)가 내연기관차 1만대 당 화재건수(1.60대)에 비해 오히려 적은 점,

화재예방·진압기술 적용과 소방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조기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등에 원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취지⁶⁾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내연기관차 및 전기자동차 화재건수

구 분	차량등록대수		차량화재건수 (1만대당 건수)	
	내연기관차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차	전기자동차
2022년	23,913,093	389,855	3,607 (1.51)	43 (1.10)
2023년	23,828,911	543,900	3,625 (1.52)	72 (1.32)
2024년	23,551,263	684,244	3,760 (1.60)	73 (1.07)

*출처: 국토교통부(차량등록대수), 소방청(차량화재건수)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실시간 배터리 위험 감지,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한 과충전 제어, 이동식 수소 및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화재진압 등을 추진 중⁷⁾인 상황으로 관련 대책을 통해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방지가 가능하기에 유치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면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한편 외부인 출입증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개방하게 하고 있어서⁸⁾⁹⁾,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¹⁰⁾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국무조정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2024.9.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10) 산업통상자원부, 「국·공립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안내」, 2023.2.

문 의 처
02)6788-5460